



‘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’

우정사업본부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우정사업본부 투자권유준칙(안) 마련

1. 관련

- 가. 금융총괄과-371('17.02.10., 2017년 우체국펀드사업 추진계획 수립)
- 나. 금융총괄과-724('17.11.08., 우체국펀드판매사업 예비인가 신청)
- 다. 금감원 자운실인가-2162('17.11.13., 자료보완 요청)

2. 우체국 펀드판매 개시를 앞두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의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가. 근거 : 자본시장법 제 50조 1항,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

나. 주요 내용

<우정사업본부 투자권유준칙(안)>

구분	내용
투자권유 및 판매일반원칙	제3조(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)신의성실, 자기이익행위 금지 등
투자자정보파악	제5조(일반·전문투자자의 구분) 투자자성향 식별 후 투자 권유
고령투자자 보호기준	제11조(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 투자 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) 일반투자자보다 강화된 적합성 판단기준 적용
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	제15조(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) 상품별 투자 위험도 분류 후 창구 비치
손실보전 등의 금지	제17조(손실보전 등의 금지)투자자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 보전 약속 금지
부당권유행위금지	제18조(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예상 수익률의 확정적 단언, 특정 금융상품 매매 권유 행위 금지

다. 향후 일정

- o 투자권유준칙 우본(안) 확정(2.28)
- o 외부평가위원회,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 예비인가 심사(3월 중)
- o 투자권유준칙 수정/최종(안) 확정(4월)
 - * 예비인가 심사시 수정내용이 없을 경우 당초 우본(안)으로 최종확정
- o 시행(판매개시일, 7월 목표)

붙임 : 우정사업본부 투자권유준칙(안) 1부. 끝.

★주무관

이종훈

행정 사무관

김수천

예금사업과장

박한선

예금사업단장

전결 02/28
代박태희

협조자

시행 예금사업과-596 (2018.02.28.) 접수 ()

☎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/ www.koreapost.go.kr
전화 [044\)200-8427](tel:0442008427) /전송 05050051012 / jegidice@koreapost.go.kr / 공개